



등록번호	농업정책과-70
등록일자	2024. 1. 2.
결재일자	2024. 1. 2.
공개구분	비공개(5)

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

농업기술센터소장		전결 2024. 1. 2. 김종혁
농업정책과 과장		최명한
청년귀농팀장		백현재
주무관		이봄이랑
협 조		



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

- 농업·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지원 필요
-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창농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

I 추진근거

-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
-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II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4. 1. ~ 12.
- 사 업 비 : *13,332백만원(도비 2,000 시비 4,666 자부담 6,666)
*경상남도 전체 사업비
- 사업대상자 :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하면서,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
 - 청년농업인 : 「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- 지원내용 :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창농 아이디어 지원
- 지원한도
 - 시설농업분야 : 개소당 7억원 내외(50% 지원) *면적 0.3ha 이상
 - 노지농업분야 : 개소당 2억원 내외(50% 지원)
 - 체험가공분야 : 개소당 2억원 내외(50% 지원)
 - 기타창농분야 : 개소당 2억원 내외(50% 지원)
- ※ 기타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시장·군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을 거쳐 집행(사업비 산출근거, 견적서, 원가계산서, 물가정보지, 타 지자체 사례 등)

III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

생산기반 지원

○ 시설농업 분야

- 시설하우스(비닐, 유리) 신축, 개축, 개보수 및 장비 설치
-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,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설치
- 육묘 및 무병육묘시설 및 장비 지원 등

※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내재해형 시설
규격 준수(설계비 포함)

* 시설하우스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
한 규정(농식품부 고시 제2022-104호)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
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, 설계도, 시방서 활용

*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

○ 노지농업 분야

- 노지농업 필요한 농지조성(성토, 배수시설)
- 다양한 전략품목으로의 품종갱신(묘목, 종자대, 자재비 등)
- 노지농업에 필요한 시설(지주, 무인방제, 방풍망, 보온커튼) 및
장비 지원 등

체험·가공 지원

-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·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

기타분야 지원

-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(창업) 지원

< 지원제외 대상 >

- 토지 및 시설(하우스)구입비, 토지 및 시설 임차료
- 차량(승용차, 운반차량 등) 일체 *단,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
- 전기·유류·가스 냉난방기(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,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
지원 가능), 농기계(트랙터, SS분무기, 예취기 등),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
부합하지 않는 시설·장비

※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(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)

IV 추진계획

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1. 2. ~ 1. 23.
- 접수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(임대차 계약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영농법인 증빙서류, 교육실적 및 영농준비 증빙 등)

* 기타 증빙서류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증빙 필요시 첨부

V 추진일정

- 사업신청 홍보 및 신청서류 접수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: 1. 23.한
- 신청서류 검토(농업정책과) : 1. 26.한
-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시(자체심의) : 1. 30.한
- 사업대상자 추천(창원시⇒경남도) : 1. 31.

※ (경남도) 사업대상자 선정 2월, 필요시 대면평가(현장·발표 평가)

붙임 : 사업시행지침 1부. 끝.